

 금융위원회	<h1>보도자료</h1>			 금융감독원
	<b>보도</b>	<b>배포 후 즉시</b>	배포	
<b>책 임 자</b>	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장 손 주 형(02-2100-2860)	<b>담 당 자</b>	김 종 식 사무관(02-2100-2865)	
	금융위원회 은행과장 전 요 섭(02-2100-2950)		서 지 은 사무관(02-2100-2954)	
	금융위원회 보험과장 하 주 식(02-2100-2960)		이 정 찬 사무관(02-2100-2972)	
	금융감독원 감독총괄국장 이 준 호(02-3145-8300)		김 범 준 부국장(02-3145-8001)	
	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장 이 준 수(02-3145-8020)		김 병 칠 부국장(02-3145-8022)	
	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장 이 창 욱(02-3145-7460)		김 봉 균 부국장(02-3145-7450)	
	금융감독원 상호금융감독실장 이 희 준(02-3145-8070)		정 대 헌 팀 장(02-3145-8072)	

## 제 목 : '동해안 산불' 피해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

### 1. 현황

- 정부는 강원도 고성·속초지역 등 산불로 상당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해 국가재난사태 선포(4.5일)

※ 국가재난사태 선포지역

- ▶ 강원도 고성군, 속초시, 강릉시, 동해시, 인제군 일원

- 구체적인 피해규모는 아직 집계되지 않았으나 농작물 등의 피해, 공장 가동 중단, 시설물 파괴 등의 피해가 예상
- 이에 따라 피해지역 내 농림어업인·중소기업 등의 금융애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

## 2. 금융지원 방안

1

### 정책금융기관

#### ①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 (산은, 기은, 신보, 농신보)

- 정책금융기관의 기존 대출 및 보증에 대해서 일정기간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연장(최대 1년)

#### ② 신규자금 지원 (농신보, 신보)

- 농어업재해대책자금신용보증(농신보)

- 재해피해 농어업인·농림수산단체에 대해 특례보증 지원

\* 보증비율 100%(전액보증), 보증료율 우대(0.3 ~ 1.0% → 고정보증료율 0.1%), 보증한도 최대 3억원

- 재난피해 중소기업 특례보증(신보)

- 재난피해 중소기업에 대해 피해 복구자금으로 특례보증 지원

\* 보증비율 85%→90%, 보증료율 우대(0.5 ~ 3.0% → 고정보증료율 0.1%), 운전자금 최대 5억원, 시설자금 소요자금 범위

➡ (지원절차) 정부·지자체로부터 '재난 복구자금 지원 결정' 또는 '재난(재해)피해 확인'을 받은 후 보증기관에 신청

## 2

## 민간 금융회사

- 은행연합회, 생명보험협회, 손해보험협회, 농협·수협·신협·산림조합중앙회와 함께 특별재난지역 기업 및 개인에 대한 금융지원
  - (은행 및 상호금융) 피해기업 및 개인의 대출원리금에 대해 일정기간(예: 6개월) 상환유예(또는 분할상환) 및 만기연장 유도
  - (보험) 가입 보험회사를 통해 재해관련 보험금 신속 지급, 보험료 납입 유예 등 지원
    - (보험금 신속지급) 재해피해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손해조사 완료 前 추정보험금의 50% 범위 내에서 보험금 조기 지원
    - (보험료 등 납부유예) 심각한 화재 피해를 입은 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보험료 납입, 대출원리금 상환 등을 유예
    - (대출금 신속 지원) 피해주민 및 기업이 보험계약 대출을 신청한 경우 신속한 대출금 지급(신청 24시간 이내 대출실시)

## 3

## 지원체계 구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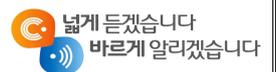
- 금감원 「금융상담센터(☎1332)」를 통해 피해지역의 금융 애로사항을 종합적으로 상담하고 지원방안 안내
- 특히, 보험의 경우 보험협회의 상시지원반\*을 통해 보험사고의 상담과 신속한 피해조사 실시

\* 협회상담센터 방문 / 전화상담(손보험회 ☎ 02-3702-8500, 생보험회 ☎ 02-2262-6600)



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 
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  
<http://www.fsc.go.kr>

금융위원회 대 변 인  
prfsc@korea.kr



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